

감 면 세 액 조 정 명 세 서					
①과세기간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	상 호		③성 명	
		②사업자등록번호			
④구 분	⑤계산내역	⑥감면대상 세 액	⑦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	⑧감면세액	
합 계			※	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이 서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.
2. 감면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감면대상 세액란에 적습니다.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해당 감면율을 적어 적용합니다.

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명세

구 분	관련조문	계 산 기 준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	제6조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0}{100}$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	제7조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제조업등의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(10, 15, 20, 30)}{100}$
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감면	제12조의2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100(50)}{100}$
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제33조의2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0}{100}$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제63조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100(50)}{100}$
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제64조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0}{100}$
사회적기업 세액감면	제85조의6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0}{100}$
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	제102조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\frac{50}{100}$

3.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(별지 제69호서식) ⑦의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,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.